



# 微生物 寄託機關 追加

## 寄託期間 및 節次도 規定

- ..... 特許廳은 지난 2월 26일 特許法 施行令 제1조 제2항의 規定에 따라 微生.....○
- .....物을 利用한 特許出願에 있어서 微生物 寄託機關을 중전의 科學技術院 및.....○
- .....社團法人 韓國種菌協會에서 特許節次를 위한 微生物寄託의 國際承認에 관.....○
- .....한 부다페스트 條約에 따라 世界知的的所有機構(WIPO)總長이 承認한 國際.....○
- .....寄託機關을 追加로 指定·告示했다. ....○

### 微生物 寄託機關

國際寄託機關은 出願公開前 까지만으로 認定 하며 이를 國際寄託機關에 寄託한 경우에는 出願公開日以前에 KAIST, 中京 협회에 다시 寄託 하여야 한다.

또 特許廳은 國際寄託機關에 寄託된 微生物의 國內寄託後의 節次는 國際寄託機關에 寄託한 微生物을 國內 기탁기관인 KAIST와 中京 협회에 다시 寄託한 때에는 이를 證明하는 書面과 國際寄託機關에 寄託한 微生物과 同一함을 進술한 書面을 特許廳長에게 提出하도록 했다.

그리고 微生物寄託期間은 寄託日로부터 特許權存續滿了日까지로 하며, 다만 당해 微生物이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 者가 容易하게 얻을 수 있게된 때에는 얻을 수 있게된 때까지로 한다.

### 告示 81-5 號는 폐지

이 告示로 特許廳 告示 81-5호는 폐지됐다. 이와함께 特許廳은 微生物을 利用하는 特許出願 및 微生物의 寄託에 관한 節次를 內規로 規

定했는데 이 節次는 特許法 施行令 제1조 제2항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 微生物寄託과 公開

微生物을 利用한 發明에 대하여 당해 微生物이 新規할 때는 당해 微生物을 特許廳長이 指定하는 寄託機關에 寄託하여 그 寄託番號를 明細書에 記載하여 出願하여야 한다.

微生物寄託은 주로 당해 微生物을 利用한 發明의 完成을 담보하는 것으로 要求되고 있기 때문에 寄託番號의 記載는 發明의 構成要件이 된다.

따라서 出願明細書에 微生物寄託番號가 記載된 特許出願은 發明의 完成으로 認定되며, 당해 微生物을 入手할 수가 없으면 그 微生物의 追試 또는 그 發明의 再現性이 확인될 수 없으므로 出願公開 이후에는 微生物도 公開될 수 있는 상태로 되어야 한다.

### ■特許出願과 寄託節次

寄託番號는 原則적으로 明細書에 記載하여야 하나 사정에 의해 出願日까지 寄託番號를 記載할 수 없을때는 수탁계약이 체결되어 발부받은

미생물보관 위탁신청서 수리번호를記載함과 동시에 그 寄託事實을 證明하는 서면을 提出하고 또 修理番號도 記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 微生物을 出願前에 寄託機關에 우송한 사실(등기우편번호)을 明細書에 記載하는 한편 그 事實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등기우편물의 受領證)를 첨부해야 한다.

## 外國人 出願과 國內寄託

國際寄託機關에 寄託된 微生物을 利用한 發明에 대한 外國人의 國內出願의 경우 國內寄託機關의 長이 微生物의 수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國內寄託機關이 수탁할 수 있다는 별도의 通報가 있을때까지 國內寄託機關에의 寄託을 延長할 수 있다. 이때 수탁기부가 寄託者의 책임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또 出願公開前에 出願公告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特許出願에서 利用하고 있는 微生物이 國內寄託機關에 기탁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微生物이 國內寄託 機關에 寄託되어야 出願公告를 결정할 수 있음을 심사관제사무취급규정 제27조에 의해 出願人에게 通知하며, 이에 따라 出願人이 당해 微生物을 國內寄託機關에 寄託하고

이를 證明하는 서면과 國際寄託機關에 기탁된 微生物과 同一함을 진술한 書面을 特許廳長에게 提出해야 한다.

## 첨부서류

出願書에 첨부하여야 하는 特許出願에 관한 微生物을 特許廳長이 指定하는 機關에 寄託한 것을 證明하는 書面으로는 이 機關에서 發行하는 微生物수탁번호 통지서 또는 微生物보관 위탁신청서 수리증을 지적한다.

## 再寄託

寄託된 微生物의 이상발생 또는 사멸 및 特許廳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했을 때는 그 微生物을 再寄託하여야 하고 이때 당초의 微生物과 同一함을 진술한 書面을 提出하여야 한다.

### <微生物의 분양조건>

▲微生物의 분양은 國內에 限하며 ▲微生物의 분양은 試驗研究目的을 위한 것이 확실해야 하며 ▲분양을 받은 者는 제3자에게 재분양하지 않아야 한다.

이상의 절차는 2월 26일부터 施行되고 있다. ㉞

# PCT 國際出願의 國內段階節次

## PCT 指定官廳으로서의 수행業務概要

- ◎..... PCT國際出願時 우리나라를 指定했을때 現在 우리나라 特許廳이 PCT指.....◎
- ◎.....定 官廳으로서 수행하는 業務概要를 紹介한다. ....◎

### 國內節次 開始를 위한 要件

PCT國際出願시 韓國을 指定한 外國出願人은

基準日 즉, 優先日로부터 20個月 또는 早期審査 請求가 있는 경우 早期審査請求日까지 ▲國際出願에 관련한 서지적 사항을 記載한 書面(번역문 첨부) 3부 ▲수수료 납부 ▲出願書, 明細書, 請

求範圍, 圖面, 補正時 補正書 및 說明書의 各번 譯文을 3부씩을 提出하여야 한다.

出願書 번역문의 作成은 國際出願書 作成要領과 같으며, 번역문은 1년 8개월以內에 行해지지 않을 경우는 取下로 간주한다. 이 기간에는 그 번역문에 같음하여 새로운 번역문을 提出할 수 있다.

그리고 實用新案登錄出願의 경우 國際出願日에 提出한 國際出願이 圖面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基準日까지 圖面을 提出해야 한다.

國際出願書와 번역문이 相異할 때의 權利範圍는 國際出願日에 提出된 國際出願의 明細書, 請求範圍 또는 圖面に 記載된 事項으로서 번역문에 記載되지 않은 것은 國際出願日에 提出된 國際出願의 明細書, 請求範圍 또는 圖面に 記載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반면에 國際出願日에 있어서의 明細書, 請求範圍圖面 및 그 出願書의 번역문에 다같이 記載되어 있는 發明以外的 內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理由로 特許異議申請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拒絕査定이 되어 特許權이 設定된 경우에는 無效事由가 된다.

그리고 委任狀이 國語가 아닌 경우는 번역문도 첨부해야 한다.

### 國內出願番號의 부여

PCT수리관청에서 이미 부여한 國際出願番號와는 별도로 우리나라特許廳은 번역문을 수리한 때 國內出願番號를 부여하고 出願日 및 國內出願番號를 通知한다.

### 優先權主張書類의 提出

國際出願에 優先權主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優先權主張書類 즉, 최초로 出願한 國家의 政府가 認定한 出願의 年月日을 記載한 書面, 發明의 明細書 및 圖面の 등본 또는 사본을 優先日로부터 1년 9개월 이내에 特許廳에 提出하여야 한다.

### 國內公開

國際事務局에서 優先日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 公開하는 國際公開와는 별도로 國內節次가 개시되는 優先日로부터 1년 8개월 경과후 즉시 國際出願의 번역문에 의하여 特許公報에 出願公開을 實施한다.

### 出願審査請求

國際出願의 出願人에 의한 審査請求時期는 번역문 제출 및 수수료 납부후로 하며, 出願人이 아닌 者에 의한 審査請求時期는 優先日 후 1년 8개월 경과후 부터다.

審査請求時限은 國際出題日로부터 5年以內로 하며, 早期審査請求는 國際出願後 優先日로부터 1년 8개월 이전이라도 國際出願의 사본을 첨부하여 조기에 審査請求가 可能하다.

### 補 正

基準日 즉, 번역문을 提出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早期審査請求가 있는 경우 審査請求한 날 以後에만 補正이 可能하다.

特許 또는 實用新案出願을 基準日 後에만 서로 變更出願이 可能하다.

그의 特許廳長은 國際調查報告書에 記載된 文헌의 사본을 提出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